

의안번호	제 109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2월 1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1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09
----------	-----

제안연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의안의 제출일을 집회일 7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공휴일의 산입여부가 불명확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질문 시기, 질문 신청일, 질문서·답변서 제출일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 의안은 회기개시일 7일전(토요일과 공휴일 산입)까지 의회에 제출
 -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
- 대집행부질문 시기를 규정함(안 제73조의2제3항 신설)
 - 질문 시기는 매회기 1차 본회의 때로 하며 질문 의원이 많을 경우는 2차 본회의 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질문신청서 제출 시기를 규정함(안 제73조의2제4항 신설)
 - 회기 개시일 5일 전(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까지 질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

○ 질문순서를 규정함(안 제73조의2제5항 신설)

- 질문신청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질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우선으로 함

○ 질문서, 답변서 제출일을 규정함(안 제73의2제6항 신설)

-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일 4일 전(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 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송부함
- 도지사와 교육감은 답변일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까지 의장에게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함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질문시기는 매회기 1차 본회의 때로 한다. 다만, 질문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2차 본회의 때에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다.
- ④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회기 개시일 5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질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 ⑤ 질문신청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질문순서를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우선으로 한다.

⑥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일 4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도지사과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과 교육감은 답변일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의장에게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일과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생략)</p> <p>② <u>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 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 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 지 않다.</u></p> <p><신 설></p> <p>③ ~ ⑤</p>	<p>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 일은 산입한다)까지 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마 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 출한다.</u></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p>
<p>제73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p> <p>① · ② (생략)</p> <p>③ <u>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 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 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 지서(일괄질문답변의 경우에 는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u></p>	<p>제73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질문시기는 매회기 1차 분 회의 때로 한다. 다만, 질문의 원이 많을 경우에는 2차 본회의 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u></p>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4일 전(질문일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도지사
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하여야 하며, 도지사
와 교육감은 답변일 2일 전까지 의장
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회기 개시일 5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질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⑤ 질문신청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질문순서를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우선으로 한다.

⑥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일 4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도지사¹와 교육감²
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¹와 교육감²은 답변
일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의장에
게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송부일과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때에는 그 전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